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김진수 | 발행처: 대한민국제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26('23-4) | 2023. 4. 3.

군인 학위 획득과 군인교수 확충 종합 방안
김기호

연금개혁과 군인연금 개혁의 비동질성에 대한 고찰
김학민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와 핵 지휘통제체계
박재완

군인 학위 획득과 군인교수 확충 종합 방안

김 기 호

(강서대학교 교수, 돌하나연구소장)

한때 시중에 나돌던 웃픈 넌센스 퀴즈가 있다. 혼인을 앞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직업군인(특히 사관학교 나온 장교)이 여성들의 ‘혼인 상대 2위’를 차지하는 쾌거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때 “혼인 상대 1위는 누구(어떤 직종)일까요?” 정답은 ‘민간인’이었다.

필자가 대구에 있다가 강원도 양구에서 보병 대대장을 하고 이어서 화천에 있는 부대의 작전참모로 이동하게 됐다. 이사는 물론 두딸들도 대구에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양구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큰딸)를 옮기고 큰딸은 1학년 입학한 지 2달도 못 돼 다시 화천중학교로 전학 갔다. 심지어 둘째 딸은 초등학교가 너무 작아서 5-6학년 합반 수업을 했다.

하루는 큰딸이 진지하게 필자에게 따지고 물었다. 아빠는 머리도 좋고 공부도 항상 1등만 했다고 하면서 왜 대기업 가서 돈 많이 벌고 서울 좋은데 살지 베스킨라빈스도 없는 이 산 골짜기로 이학교 저학교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끌고 다니느냐는 것이었다. 필자는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혔다. 가슴이 울렁거렸지만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놓고 북한군의 위협을 설명했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려고 다 대기업으로 가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겠냐 그래서 아빠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이 험란한 정의의 길’을 택했다고 했더니 그 뒤론 일체 묻지 않고 잘 따라 주었다. 오히려 둘째는 현재 여군 중견장교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직업군인의 복지문제, 특히 최전방, 격오지, 섬 등에 근무할 시 주거, 가정생활, 교육, 종교, 문화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사명감과 20년 복무하면 연금을 받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가치관, 직업관이 흔들리면서 직업군인들의 복지, 특히 전역군인들의 후반전이 불안하다. 연금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필자의 경우 아직까지 반듯한 집 한 채가 없다. 주변에서 물으면 우스개소리로 최영 장군을 존경해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돌려댄다.

필자가 국방대학교 안보과정(2006)에 다닐 때 보니 육사 동기생이라고 공무원으로 나간 동기생들은 필자가 육군대령으로 56세 2월에 만기 전역한 것에 비해 4년을 더 근무하면서 60세에 정년을 맞고 있었다. 정년 후에도 중앙부서 산하기관들이 많아서 그곳에서 최소 3~4년 정도 역대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한다. 그들은 대부분 대위 시절 군 생활을 어려워 하면서 직업 군인 보다는 공무원으로 바꿨는데 오히려 혜택은 더 많이 받는 것 같다. 이사도 별로 하지 않아 모두 똑똑한 집 한 채는 갖고 있다.

그러나 정신없이 전후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복무한 중장기 간부들은 전역 후 길이 막막하다. 국방부와 육군(각군)에서 전직담당관이 있어서 사전 교육도 하고 전직준비기간도 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 제대군인들을 위한 고시학원들이 생겨났다. 이른바 비상계획관(비상대비업무담당관) 학원이다. 대개 1년을 준비하거나 재수 삼수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대기업 비상계획관에 선발되면 역대 연봉을 받기 때문에 이런 피땀은 감수한다. 은행, 정부 중앙부서, 지자체에도 간다. 이들 사이에선 공공연히 서열이 정해져 있어서 성적순으로 선발된다고 한다.

장군으로 전역하는 경우도 90년대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갈 자리가 없다. ‘한국연구재단’에 교수요원으로 지원해서 어렵게 선발될 시 지방대학은 3년, 인(in)서울대학은 2년간만 강단에 설 수 있다. 또한 ROTC가 설치된 대학의 안보학 교수 자리와 군사학과가 있는 대학의 군사학 교수 자리의 인기는 상당하다. 그러다보니 서울(수도권), 대전권(계룡대, 자운대) 등의 민간대학교 대학원에는 전역을 앞둔 중령에서 장군까지 많은 학생들이 야간과 주말에 석박사 학위를 받기 위하여 주경야독을 하고 있다. 필자도 10여년간 서울 시내 00대 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몇 백명 군인학생들의 학위논문을 지도하고 심사했다.

가관인 것은 군에 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민간인 교수에게 못 장군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군사학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받고 있는 실태다. 실례로 대전권의 00대 K교수는 계룡대 장군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 K교수에게 박사논문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이다. 국방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수요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수도권과 대전권 및 전국의 사단급 이상 부대에는 초급 및 전문대학의 현지 출장소같은 분원대학이 설치돼 있는 곳이 많다. 그곳에는 부사관들과 초급장교들이 많다. 사이버 대학과 방통대에는 부사관들이 넘쳐난다. 전공도 장교들은 외교안보, 군사학이 많고 부사관들의 경우 사회복지, 부동산이 많다.

전역을 앞둔 군인들이 대학 졸업장과 취업을 위해 석박사 과정에 쏟는 돈과 시간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또한 안보학, 군사학 교수(부사관학 교수)의 경쟁은 실로 치열하다. 이제는 국방부 차원에서 이같은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세울 때이다. 왜냐하면 장기 복무로 만기 전역시 50대 중반이라 앞으로 20년을 더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군대학, 합동참모대학의 교과과정에 군사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국방대의 전국 분원을 기존 군사학교와 부대 건물에 설치하여 민간대에서 공부하는 군인들을 흡수하는 방안등을 연구해야 한다. 대부분 안보학, 군사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민간대 교수로 가려고 애쓰는 군인출신 교수들과 박사학위 소지 인력들을 인재풀로 운영, 국방대 분원 교수로 쓰는 방안도 있다. 참모총장까지 마쳤거나 중장급 이상 고위 장성출신들이 민간대 석좌교수를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이같은 고급인력인 제대군인 복지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때이다.

연금개혁과 군인연금 개혁의 비동질성에 대한 고찰

김 학 민

(선문대학교 교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군인연금 배경과 개혁과정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①공무원연금과 군인 연금의 적자(2022년, 4조1천억 원)의 지속과 ②2057년 공적기금 전액 소진될 우려, 그리고 ③빠른 인구노령화에 따른 대책 마련의 시급성 때문이다. 즉, 연금대상자별로 연금제도의 형평성 유지와 누적된 적자 해결 마련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4대 연금은 그 종사자와 근무형태가 공평하지 않음에도 복지성 지급에 대한 형평성 요구와 정책 및 운영 부실 등 적자요인 해소 노력없이 기여율과 지급을 조정만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적절한 수준의 노후생활 보장과 중장기적 차원의 재정담보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군인연금에 대한 과도한 개혁은 그 피해와 후유증, 위험성이 남다르다.

공무원연금지급은 「국가공무원법(1949.8.)」 제26, 27조에 포함되었으나, 6·25전쟁과 이에 따른 국가재정이 궁핍함에 따라 미시행되다가 「공무원연금법(1960.1.1.)」이 제정된 이후 시행되었다. 당시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법(1960.1.1.)」 제4장에 반영되었었는데 군의 특수여건 반영의 필요성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연금법(1963.1.2.)」을 제정하였다. 이는 국가방위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군의 특수한 위치와 임무 및 역할을 고려한 것이며, 진급 연함과 빈번한 상해위험, 군가족 생활보장 등 특수성 고려에 대한 필요성, 당연성 때문이었다.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연금법(1963.1.2.)」 제정 이후 기여금납입과 연금기간 포함 등이 시행되었으나, 6·25전쟁과 월남전 등 전투참여 기간을 그 기간의 3배로 계산하고, 대상자가 급증하는 등의 사유로 시행초기부터 적자였으며, 당시 국가가 군인연금재정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의해 연금운영재정 적자의 국가보전은 문제시 되지 않았었다.

주요 쟁점과 해결책

군인연금이 타 연금보다 지급율이 높다고 하나 이는 국가보상책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고 균등하다면 역차별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국가재정 보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 요구와 후손들에게 부채적 성격인 적자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제시에는 긍정적이나 근본적으로는 보수체계의 재정립과 차별화된 봉급 향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군인연금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나 해외의 사례(미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독일)와 비교하면 근속기간이나 형태, 연금지급, 복지대책 등 아직도 지극히 열악한 측면이 많다.

현재 국민연금의 기여율은 9%이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18%이며, 군인연금은 14%이다. 지급율은 국민연금이 1.0%,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1.7%, 군인연금은 1.9%이다. 산술적으로 본다면 군인연금이 유리하나, 이는 생명보험 및 근속위험 측면, 정년 미보장, 사망을 기본적으로 반영한 가족생계비 등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국민 평균수준이하의 수당지급, 열악한 근무여건, 문화수준과 거주 및 자녀교육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현재의 보수체계의 상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국가재정의 보전과 후손들의 부채 최소화를 위해 그동안 정부는 연금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군인연금법」 개정(2000년)함으로써 개인 및 국가부담률을 각각 7.5%에서 8.5%로 인상과 연금지급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고로 지원토록 하는 연금재정 안정화 제도도 법제화한 바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군인연금 기여금부담률을 공무원연금과 같이 18%(본인 9%+국가 9%) 인상하자면서 역주행하고 있는 현실이다(군인연금법, 2022.2.3., 법률 제18803호 일부개정).

군인연금 정책의 타당성, 필연성

군인연금이 1973년에 고갈된 원인은 기여금제도가 미성숙된 상태에서 6·25전쟁과 월남전, 북한의 도발에 따른 사상자 발생 등 연금지급대상자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고갈시점(2002년)과 사학연금(2049년) 및 국민연금(2057년)의 고갈시점이 상이한 이유는 연금발생시점이 차이나고 연금지급대상자 및 시기가 차이 때문이며, 지급율에 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인을 해소하면서의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나 시점이다.

군인연금은 「군인전역급여규정」(대통령령 제1186호, 1957년), 「공무원연금법(1960년)」, 「군인연금법(1963년)」 제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당시 군인연금 본인기여금 3.5%, 국가부담금 2.3%, 지급률은 40~50%였으나, 1970년에는 본인기여금을 5.5%(보수월액)까지 인상했으며, 1996년에는 7%까지 인상하면서 유족연금은 50% 감액하였다. 또한 2000년대에는 IMF 외환위기로 본인기여금을 8.5%로 다시 상향하였다. 이런 이유로 인해 현재 공무원 연금은 개혁 찬성이 압도적이나, 군인연금 개혁은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상태이다.

군인연금의 재정이 가장 열악하나 일방적 추진과 현실을 무시한 개혁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군인연금법 제1조(목적)에는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군인연금은 군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기본 제도로서 생계위험 방지와 생활보장, 사기증진, 안정감 부여 등을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신뢰감 배양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군인연금에는 퇴직급여, 유족급여(퇴직유족급여, 재해유족급여), 장해급여, 부조급여와 공무상요양비, 퇴직수당, 그리고 분할연금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퇴직이후 국가 보전은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 군인연금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것이 현실이며, 전직 지원제도 강화도 필요하다. 정년보장이 안되는 직업군인에게 연금제도 개혁은 충원율과 부정방지 등 오히려 상황 악화방지 및 위험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인재 확보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방향 및 대응자세

정책의 완전성을 추구하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의 사기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재향군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향 제시 및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정책개혁과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거부하지 않는 선에서 현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역들의 동요를 막을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추진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대안은 봉급 및 수당의 인상과 전직지원제도의 활성화이며, 우수한 K-방산수출에 이어 K-방산인력수출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듯이 현신적 자세, 무수한 전출과 잦은 이사, 해외여행 제한, 잦은 야간&밤샘 근무와 수당의 미연계, 혹한기 훈련, 유격훈련 등 위험도 높은 업무는 물론 퇴역군인의 생계보장은 군사기밀 유출의 방어책이기도 하다. 또한 45-56세에 전역하는 등 정년 미보장도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적 손실과 이득 차원으로만 비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최근에 어느 직업군인의 아내에 의한 “직업군인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참고하면서 대응하였으면 한다.

“저는 직업군인 아내입니다. 저희 남편은 직업군인 8년차 중사인데 월급은 210만원 정도입니다. 관사는 낡고 그나마 들어가지도 못하고, 몇날 몇일 동안 씻지도, 제대로 밥도 챙겨 먹지 못하고 영하 20도 산속에서 훈련하고, 30도가 넘는 흙바닥에 구르며...휴가도 스케줄을 비교해가며 써야하고 위수지역이 존재하여 명절이나, 가족행사 등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2세 계획을 하고 싶어도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 혼한 주말의 자유, 휴일의 자유도 없습니다... 연금을 받기까지 고생한 사람들의 과정을 알면 메리트가 있는 게 맞을까요? 군인들은 최소 20년을 넣어야하고, 55세에 퇴직...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네요???? 군인은 목숨을 담보로 임무 수행 중 죽을 각오를 합니다. 참 서러운 말이지만 군인은 가족보다 국가가 우선입니다. 특별대우까지는 못해줘도 기존의 혜택은 줄이면 안 되는거 아닐까요? 대한민국은 누가 지킬까요? 제발 군인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핵 지휘통제체계

박 재 완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현실태

북한은 그동안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다중화·표준화·규격화를 달성하여 핵무기 개발은 이미 2017년에 완성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양한 기관에서 상이한 핵탄두 보유수량을 추측하고 있는데, 2023년 현재 100발 내외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물론 투발수단에 장착했는지, 작전배치까지 이루어졌는지,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에 장착하여 운용하기 위한 대기권 재진입과 유도조종, 다탄두 등의 문제는 핵무기 완성과는 별개로 핵무기 완성 이후의 핵전력 현대화 일환으로 봐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와 증원전력 전개에 영향을 미치고 일본과 괌까지 타격이 가능한 전술핵무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는 별개로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22년도에만 30여 차례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2023년에도 새해 벽두부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시작으로 2023년 3월 27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서 전략순항미사일과 수중드론 핵어뢰로 평가되는 핵무인수중공격정까지 12차례에 걸쳐 27발의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발사 장소와 수단도 지상뿐만 아니라 호수, 해상, 수중과 이동식 발사대(TEL), 지하 발사대(사일로, silo), 열차 기동을 비롯한 잠수함발사 등 차륜형·궤도형·철도기동형·잠수함발사형 등 다양한 플랫폼을 발전시켜 발사 장소와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장소와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한미의 정찰감시자산 운용에 제한을 주고 한국형 3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향후에도 북한은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라 7차 핵실험 강행은 물론 다양한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과 더불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및 시험발사, 고체연료 기반 다탄두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 전략무기 개발 과업 완성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 지휘통제체계

북한이 다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다양한 투발수단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북한의 핵능력과 북한의 공세적인 의지가 결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북한은 2022년 9월 8일 핵무력정책법을 공포하며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선제 핵사용 가능성과 공세적인 핵사용독트린을 법제화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의 핵 지휘통제체계이다. 핵 지휘통제체계는 핵사용 문턱(nuclear threshold)과 직결되고 반드시(always)와 절대(never) 딜레마(dilemma)에 봉착하게 된다. 이 딜레마는 정책적으로 핵사용이 결정되면 반드시(always) 작동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대로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서 핵사용이 절대(never)적으로 방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어떤 핵 지휘통제체계를 지향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장 잘 나타난 것은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이다.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은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원칙, 핵무기의 사용조건, 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와 기타 등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많은 부분은 핵 지휘통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핵 지휘통제체계는 표면적으로 김정은의 유일적 지휘체계에 복종한다(3항 1)는 ‘중앙집권적 핵 지휘통제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진다. 하지만 국가 핵무력에 대한 핵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협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3항 3)고 되어 있어 ‘위임분권형 또는 제한분권형 핵 지휘통제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하이브리드(hybrid) 핵 지휘통제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하이브리드 핵 지휘통제체계는 반드시(always)와 절대(never) 딜레마와 더불어 미국의 한반도 관여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핵무기와 전쟁수행전력(war-fighting capabilities)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술핵무기에 따라서도 핵 지휘통제체계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억제와 확증보복 관점에서는 중앙집권적 핵 지휘통제체계가 유리한 반면, 핵 대응의 반응시간 최소화와 전술핵무기를 전쟁수행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임분권형 또는 제한분권형 핵 지휘통제체계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에도 김정은의 중앙집권적 핵 지휘통제체계와 사전에 결정된 위임분권형 또는 제한분권형 핵 지휘통제체계가 혼재되어 있다.

핵무력정책법에는 핵무력의 지휘통제에 대해 김정은의 유일적 지휘권과 의사 결정권을 보장하면서 국가핵무력지휘기구가 핵무기 사용 결정부터 집행과정에 대해 보좌하는 체계를 명시하여 절대(never) 딜레마 해소를 위한 중앙집권적 핵 지휘통제체계를 지향하는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핵 지휘통제체계가 위협해지는 경우엔 사전에 결정한 작전계획에 따른 자동핵보복체계(dead hand)를 명시하고 있고,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명시(7항)하여 핵 무기 사용 명령이 하달되면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반드시(always)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8항)를 통해 절대(never) 딜레마 해소를 위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더욱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자동핵보복체계이다. 자동핵보복체계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킬 체인이나 한국형대량응징보복(KMPR)에 의해 김정은 등 북한의 지휘부 제거를 위한 참수작전의 실행에 많은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다.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강압적이고 공세적인 핵 독트린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핵사용 문턱(nuclear threshold)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더 나아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명확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실체 파악과 더불어 북한의 핵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과 진단, 대응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